



### Ⅲ 주요 지적사항 요약

#### ① 회계·계약분야

#####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물품구매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등

##### 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써,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으로 열거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외 명시되지 않은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사무실 운영을 위한 총 2건, 312천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으로써 사무관리비 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항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나. 상품권, 특산품 등 물품구매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그 대상자 및 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상품권, 특산품 등 총 3건, 1,030천원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다.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화환 제공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화환·화분·기념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의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이거나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관내 초등학교 총동문회 개최에 따른 축하 명목으로 대상이 아닌 자에게 200천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되,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최소 분기마다 공개(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총 54건, 7,430천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짧게는 3일, 길게는 107일까지 기한을 초과하여 공개(군 홈페이지 게시)한 사실이 있음.

## 2) 법인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사후 품의 결제 승인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 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총 17건, 3,446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 없이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사후 품의 결제 승인을 받는 등 법인카드 사용 회계 처리 절차를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3)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견적서 제출 및 가격협상도 없이 추정 금액 그대로 수의계약 체결

-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견적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와의 조율(협상)을 통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 ‘강계마을 옆들 관정개발공사’ 발주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견적서도 제출 받지 않고 가격협상(수의시담)도 없이 설계예산서의 추정 금액 그대로 해당 업체와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4) 지정폐기물(폐석면) 위탁처리 부적정

지정폐기물(슬레이트) 분리발주 無, 석면해체업자에게 부적정 일괄발주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자(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발주(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 ‘가북면사무소 청사 석면텍스해체처리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폐석면)에 대해 자격요건이 없는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일괄 위탁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5) 공사·물품(관급자재)구매 계약서 작성 미흡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준공·납품일자, 계약보증기간, 기명날인 등) 누락

- 「지방계약법」등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인 재무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하나,
- ‘면사무소 청사 석면텍스해체공사’ 등 총 3건의 공사와 물품(관급자재)에 대해 수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납품)기한, 계약보증 기간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필수 기재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명의인에 계약담당자(재무관)의 기명날인을 누락 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절하게 작성·체결한 사실이 있음.

## 2) 건설공사분야

### 1) 전기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경미한 전기공사 아닌’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전기공사는 전문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부실 시공 방지 및 시공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추동마을 경로당 환경개선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 내용에 포함된 경미한 전기공사 아닌 전기공사를 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2) 조경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소홀

돌발병해충 방제 가로수(산수유) 전정공사 등 2건, 하자보수보증금 미 징구

-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23년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가로수(산수유) 전정' 등 2건의 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또는 하자보수보증서)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징구 없이 대가를 지급하였음.

## 3) 군도6호선 도로 정비 공사 도로 점용허가 미이행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 구역 내 도로 (횡단)굴착 공사 시행

- 「도로법」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에서 도로 (횡단)굴착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도로 관리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 '군도6호선 가복개금측구 정비공사' 등 도로 구역 내 2건의 도로 (횡단) 굴착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목적 외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4,169천원 과다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정산을 할 때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실적 서류를 검토·확인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간접공사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 '공수마을안길 배수정비공사' 등 9건에 대하여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실적을 도급자가 제출하였음에도, 안전관리비 4,169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5)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가북 우혜 저수지 정비공사' 등 1,388건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최종 하자검사 조서와 함께 결과를 제출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 '가북 우혜 저수지 정비공사' 등 1,388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6)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비 5,265천원 과다 지급

- '호암 갯군골 배수로 정비공사' 등 12건에 대하여 설계내역서에 따른 현장 소운반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5,265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3) 농업분야

### 1)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 신고 농지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착오 지급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지전용 신고 농지인 가북면 용암리 \*\*\*번지에 대하여 공익직접지불금 133,860원을 착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 소홀

유사한 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중복 수혜자 미제외, 중복 지원 초래

-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는 대상자 선정 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문화누리카드 선정자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 대상자 신청 접수 시 문화누리카드 등과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화누리카드 지원자와 중복되는 신청자 명단을 군에 제출하여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가 부적정하게 지원되게 한 사실이 있음.

### 4) 세무분야

#### 1)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과세 누락

미신고·납부 상속재산 취득세, 1,276천원 과세 누락

-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해 신고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부과를 하지 않아 취득세 등 1,276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2) 가설건축물 취득세 과세 누락

취득세 미신고 가설건축물(4건), 205천원 과세 누락

-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4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아 취득세 205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3)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적정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법인에 대한 재산세 88천원 부적정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농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단지봉마을영농조합법인 등 2개의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법인에 대하여 재산세 88천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음.

### 4) 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적정

####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적정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업원분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개인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 687천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음.

## 5) 복지분야

### 1)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소홀

#### 가북경로당 등 30개소,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가북경로당 등 30개소의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정산 검사하면서 부적정 지출 87건, 증빙서류 미비 34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박○○ 등 7명의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사용실태 점검 미이행

-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급여관리(사용) 실태를 주기별로 점검하되,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타인의 급여 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기별 급여사용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박○○ 등 7명에 대해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로서 수급비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사용실태 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3)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주차표지판 회수·폐기 업무 소홀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 미송달 및 분실확인서 등 미징구

-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장애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환통보서를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장애인사용자동차를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장애인주차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 사망 등으로 장애인등록증 등이 말소된 김○○ 등 20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분실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4)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미흡

통합사례관리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모니터링 미이행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접수(인적조사)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정○○에 대하여 대상자 접수(인전조사) 후 30일의 기간을 경과하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수립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6 기타분야

### 1) 당직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과오 지급

####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196천원) 과오 지급

- 재택당직근무 시 초과근무를 한 당직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당직근무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시간만큼 제외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정산하여야 하나,
- 초과근무 수당 정산 시 당직근무 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시켜 정산하여 초과근무수당 총 13건, 196천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음.

### 2)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 우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정비 등 11개 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보험 미가입

-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 '우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정비' 등 11개의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3) 비밀문서 관리 소홀

#### 파기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누락, 비밀열람기록전 미보관 등 비밀문서 관리 소홀

- 「보안업무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문서를 취급하여야 하며, 비밀사본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자, 파기확인자를 명시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서 비밀을 분리하여 파기자, 파기확인자 등을 기재한 후 보관하여야 함에도,

- 비밀관리기록부 등 파기에 파기처리자,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거나, 비밀열람기록전에 파기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누락 7건, 비밀 열람기록전 미보관 7건, 비밀 열람 시 비밀열람기록전 작성 누락 8건 등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4) 민방위대 교육훈련 대상자 면제처리 부적정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 4건에 대해 신청서 접수 누락

-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 4건에 대해 신청서를 누락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5)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확인 소홀

#####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작성 시, 세대주·이장·관계 공무원 서명(날인) 누락

- 「주민등록법」 등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할 이장에게 사후확인서를 보내고 이장은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군수는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전입신고 사후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세대주(22건) 또는 이장(62건), 관계 공무원(55건)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6)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소홀

#####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접수) 시 접수인, 발급번호 등 누락(미기재)

- 「인감증명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 받은 위임장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 접수한 45건에 대하여 접수인 누락(45건), 발급 번호 미기재(5건), 발급사항 미기재(2건), 위임장 서식 상이(2건) 등 인감 증명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7) 최종퇴청 시 무인경비시스템 미작동

### 당직근무자, 무인경비시스템 미작동 퇴청(8회)

-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당직보완 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당직근무자가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퇴청(8회)하는 등 청사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8) 보안점검표 작성 소홀

### 점검항목 미확인, 최종퇴청자·당직근무자 미서명, 퇴청시간 미기재 등

-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에 따르면 부서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며, 당직 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21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21건의 점검항목 확인란과 최종 퇴청자 및 당직근무자 서명란, 퇴청시간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